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5.14.
전문개정 2017.3.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②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③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④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⑤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과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본교 구성원인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교원(비전임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 및 입주상인(피고용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신고인보호)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③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의무)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한다.
- ⑤ 성폭력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한다.

제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양성평등상담실)

제7조 (설치) 본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총장직속 기구로서 양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②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사건보고와 처리 요청
- ③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업무와 조사위원회 구성
- ④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 ⑤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관련자료 보존
- ⑥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9조 (구성과 임무)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상담실의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2절(조사위원회)

제10조 (설치)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양성평등상담실 내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상담실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로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 (기능)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증재를 한다.
- ②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 ③ 상담실에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회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위원장은 상담실로부터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성폭력대책위원회)

제14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④ 상담실 내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상담실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구성)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상담실 연구원이 간사가 되며, 상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교수대표, 직원관련은 총무처장과 직원대표, 학부생관련은 학생처장과 학부생대표, 대학원생대표로 이루어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단, 직원 또는 학생관련 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장이 사건을 보고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처리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직의 박탈)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 ① 위원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 판단기준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해당위원의 위원직 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제6조(피해자 중심의 원칙)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8조 (신고)

-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 ②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상담)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0조 (조사)

- ①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본 규정에 정의된 성폭력에 해당될 경우 신고인의 동의하에 합의를 중재 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장은 상담실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일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중재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제21조 (처리)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처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2. 법령 또는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요청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피의자의 실명공개 사과
5. 피의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6. 피의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7.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8.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9.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10.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원 칙

제22조 (시행세칙)

-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개 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발의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5.14.
전문개정 2017.3.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②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③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④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⑤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과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본교 구성원인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교원(비전임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 및 입주상인(피고용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신고인보호)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③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준수의무)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한다.
- ⑤ 성폭력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사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한다.

제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양성평등상담실)

제7조 (설치) 본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총장직속 기구로서 양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②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사건보고와 처리 요청
- ③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업무와 조사위원회 구성
- ④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 ⑤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관련자료 보존
- ⑥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9조 (구성과 임무)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상담실의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2절(조사위원회)

제10조 (설치)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양성평등상담실 내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상담실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로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 (기능)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를 한다.
- ②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 ③ 상담실에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회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위원장은 상담실로부터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성폭력대책위원회)

제14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④ 상담실 내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상담실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구성)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상담실 연구원이 간사가 되며, 상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교수대표, 직원관련은 총무처장과 직원대표, 학부생관련은 학생처장과 학부생대표, 대학원생대표로 이루어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단, 직원 또는 학생관련 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장이 사건을 보고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직의 박탈)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 ① 위원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 판단기준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해당위원의 위원직 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제6조(피해자 중심의 원칙)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8조 (신고)

-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 ②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상담)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0조 (조사)

- ①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본 규정에 정의된 성폭력에 해당될 경우 신고인의 동의에 합의중재 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장은 상담실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일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중재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제21조 (처리)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처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 2. 벌명 또는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요청
-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 4. 피의자의 실명공개 사과
- 5. 피의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6. 피의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 7.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 8.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 9.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10.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원 칙

제22조 (시행세칙)

-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발의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2002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신학대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